

##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分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연 금 보험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보 험 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건강·고용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의 료 비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① 본인 등	전 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교 육 비	②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①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취학전 아동		공제금액	② - (총급여액 3% - ①)	③ + (② - 총급여액 3%)								
	초·중·고생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주 택 자 금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 월세액	연 300만원 한도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기 부 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특례	소득금액 5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그밖의 소 득 공 제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 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25%*)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치불카드 : 25% 공제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자료 : 국세청

# 한 번에 정리하는 2011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 1.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 소득금액
근로자본인	거주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
	직계비속/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1991.1.1 이후 출생) /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요건 없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의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941.12.31 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 (2006.1.1 이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b>2011년 개정</b>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2인 100만원, 3인 300만원, 4인 500만원, 5인 700만원

##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보험료공제 (①+②+③)	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② 기타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순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 연 100만원 한도 ③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① 본인, ② 65세 이상, ③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④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제외) ▶ ④ < 총급여액 3% : 의료비 공제금액은 (①+②+③) - (총급여액 3% - ④) ▶ ④ ≥ 총급여액 3% : 의료비 공제금액은 (①+②+③) + 적은 금액[(④ - 총급여액 3%), 700만원] ※ ②, ③, ④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교육비공제	구분 대상 공제한도
	본인 직장에서 보조 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전액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구분	공제항목	통합한도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월세액소득공제 : 2011년 개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 40%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경우 1000만원까지 (30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1500만원)
주택마련 저축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20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 300만원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 2011년 개정 기부자 기준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단체 : 법령에서 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	
구분	공제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 특례기부금(2011.6.30까지 해당분)	(근로소득금액 - ①) × 50%	
③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	
④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2011년 개정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공제항목	공제요건 및 특이사항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 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011년 개정 연금저축공제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라간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납부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2011년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11년 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 직불·기명식선불 전자지급 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중복 허용
	일몰기한 연장
공제문턱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율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금액의 2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초과 사용금액의 20%
기타	월세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등은 제외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중복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